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1996. 12.1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시행령(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제2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안 제2조)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서무과장이, 서기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